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6. 2.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6. 2.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목 차 Contents

I	해빙기란?	07
II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징	13
III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17
	1. 굴착면 무너짐	18
	2.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떨어짐	32
	3. 지반 침하	43
	4. 굴착기 끼임·부딪힘	48
	5. 달비계 떨어짐	54
	6. 지붕공사 떨어짐	58
IV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자료	63
V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점검사항	74
부록	핵심안전수칙 자율점검표	87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경향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는 등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겨울철 대비 13.5% 증가 (최근 5년 통계 기준)

해빙기 발생형태별 핵심안전수칙

무너짐



- ✓ 지반상태 확인, 빗물유입 차단
-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 ✓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준수
- ✓ 변형, 손상여부등 이상유무 점검
- ✓ 계측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조치

부딪힘, 끼임



- ✓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 확인
-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 ✓ 후방카메라 부착 등 주변확인 철저

떨어짐



- ✓ 로프와 건물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 ✓ 별도의 구멍로프 설치 및 고정
-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채광창 덮개 및 작업발판 설치
-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기초 안전수칙 준수

3대 기초 안전 수칙

-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 ✓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 안전벨트 착용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해빙기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01 굴착면 무너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
굴착면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완만하게 유지	
배수로(즉구), 방수 천막 설치 등 배수 조치	
토석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망 설치, 작업자 출입금지	

02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
흙막이 지보공은 구조 검토 후 조립도에 따라 설치	
흙막이 지보공 수시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지반 침하 여부 등 계측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	

03 굴착기 부딪힘, 끼임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
지반상태 등 확인 및 운행경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립	
후사경, 후방카메라 부착 등 굴착기의 좌우 및 후방 확인	
굴착기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04 달비게 떨어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 마모방지를 위한 덮개 등 설치	
작업로프와 별도의 구명용 로프 설치 및 고정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05 지붕 떨어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채광창 덮개 및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해빙기란?



1.1 해빙기 중점 관리사항

▶ 해빙기란?

해빙기(解氷期)란,

사전적 의미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하며, 법적으로 구체적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매년 2월 말 ~ 4월 초**가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 해빙기에 어떠한 재해가 주로 발생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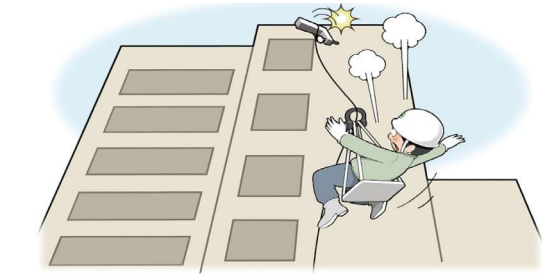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굴착면 무너짐



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굴착기 작업 및 이동 중 끼임·부딪힘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짐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공사 중 떨어짐

📄 이것만은 꼭!

-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조치
- 굴착 전 작업장소 및 주변 지반, 인접 건물에 대해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 유무 등 점검**
- 흙막이 지보공의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
- 굴착기에 후사경, 후방카메라 부착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조치,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 달비계 작업 시에는 별도의 **구멍로프 설치 및 고정**하고 **보호구 착용**
- 지붕작업 시에는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 착용) 설치**

1.2 해빙기 기상전망

* 출처: 기상청



날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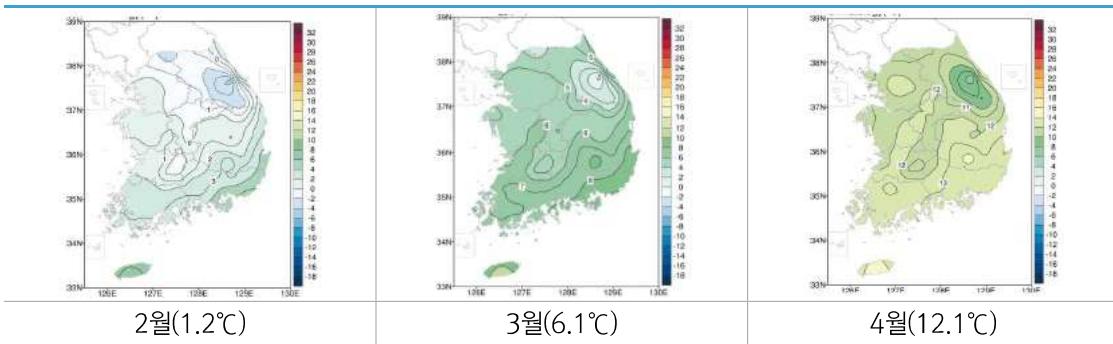
올 해빙기의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대체로 많을** 수 있습니다.

기온 전망

-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고, 3~4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평년 : 지난 30년('91~'20)간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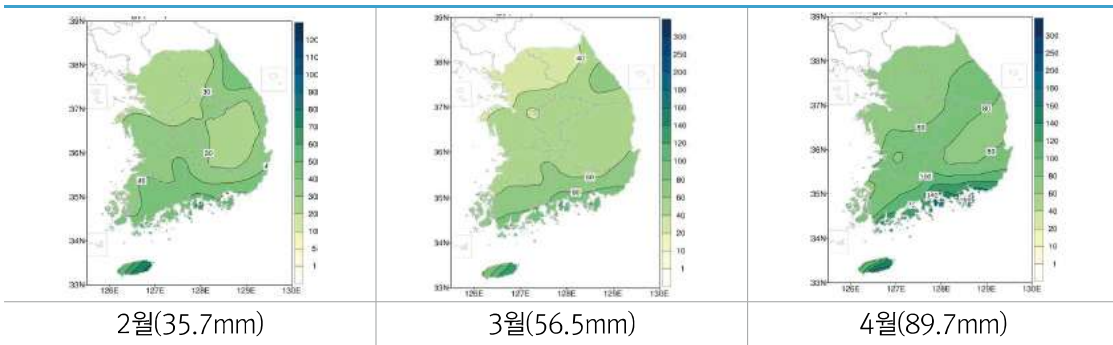
월별 평균기온(°C) 평년 분포도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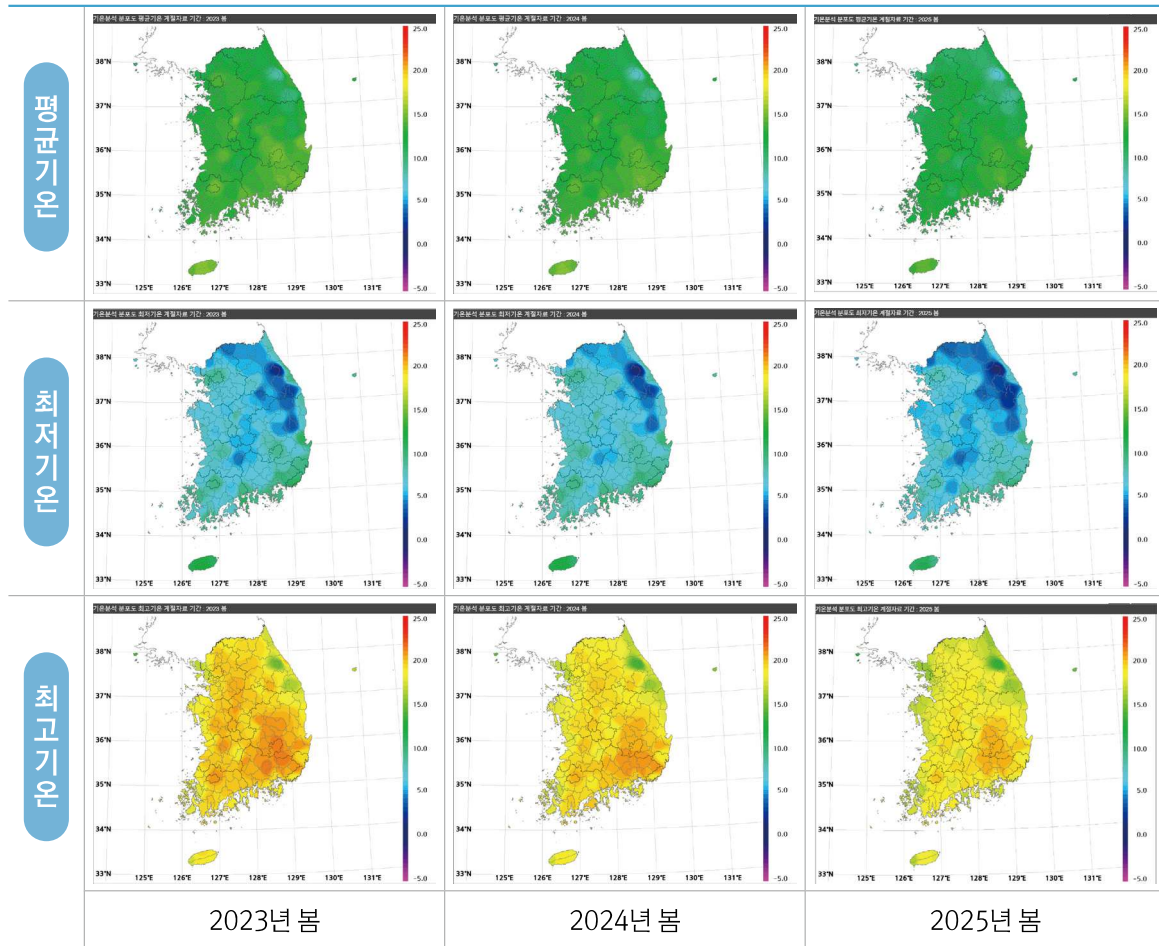
-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으며, 4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별 합계 강수량(mm) 평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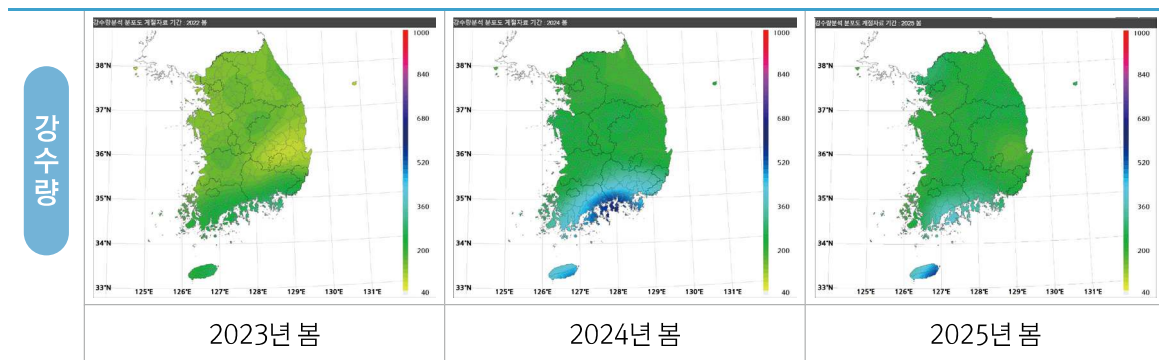


참고자료 ① 봄철 날씨 분포도

▶ 지난 3년간 봄철 기온 분포도



▶ 지난 3년간 봄철 강수량 분포도



참고자료 ②

해빙기 관련 기상특보

* 대설 등 6종에 대한 단계별 주의보와 경보

구분	내용	
 대설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한파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이나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풍랑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기상특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 가능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II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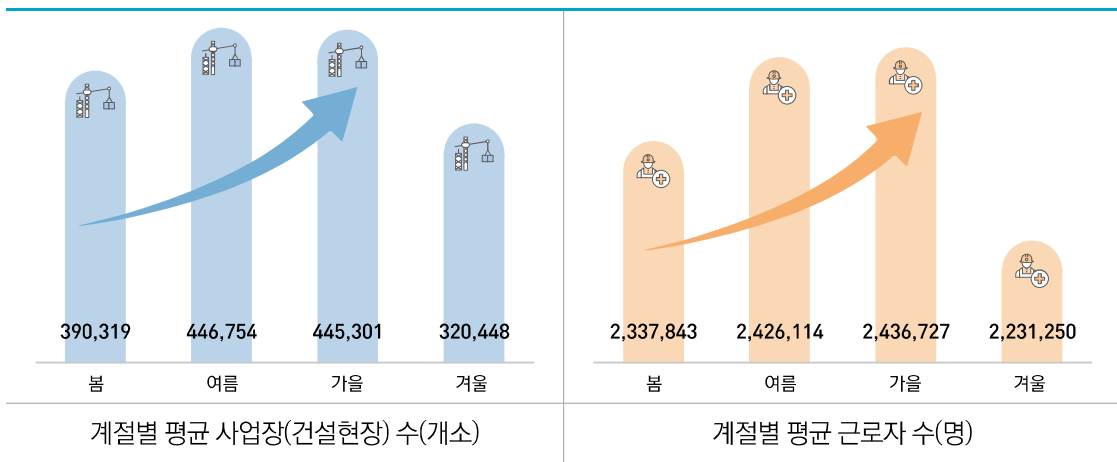


2.1 해빙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특징

▶ 해빙기 건설현장 특성 및 사망사고 현황

-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을 기점**으로 신규 착공이 증가하고, 동절기에 중단되었던 공사 재개로 인해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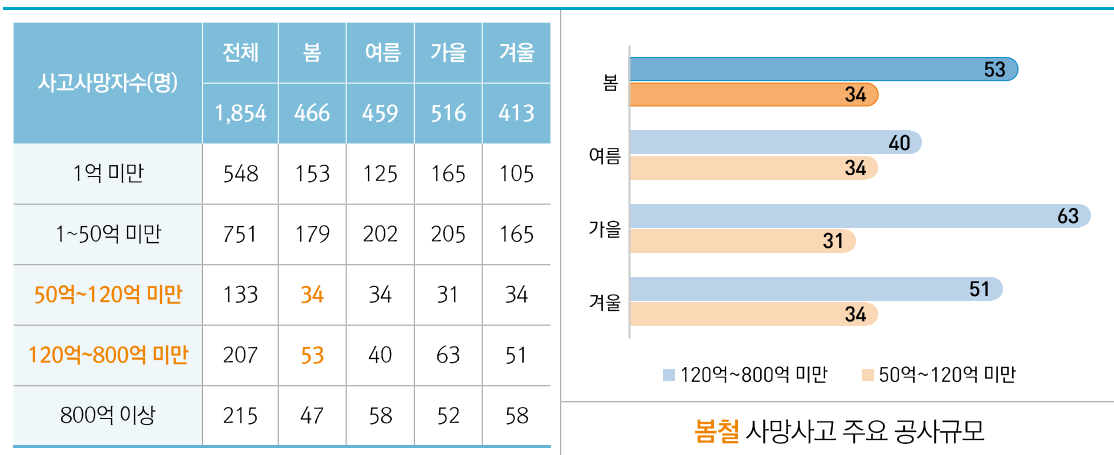
최근 5년간('21~'25) 계절별 평균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공사규모별 현황

-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1,299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나, 50억~800억원 미만 규모에서는 가을과 비슷하게 **해빙기인 봄철에 사망사고(87명)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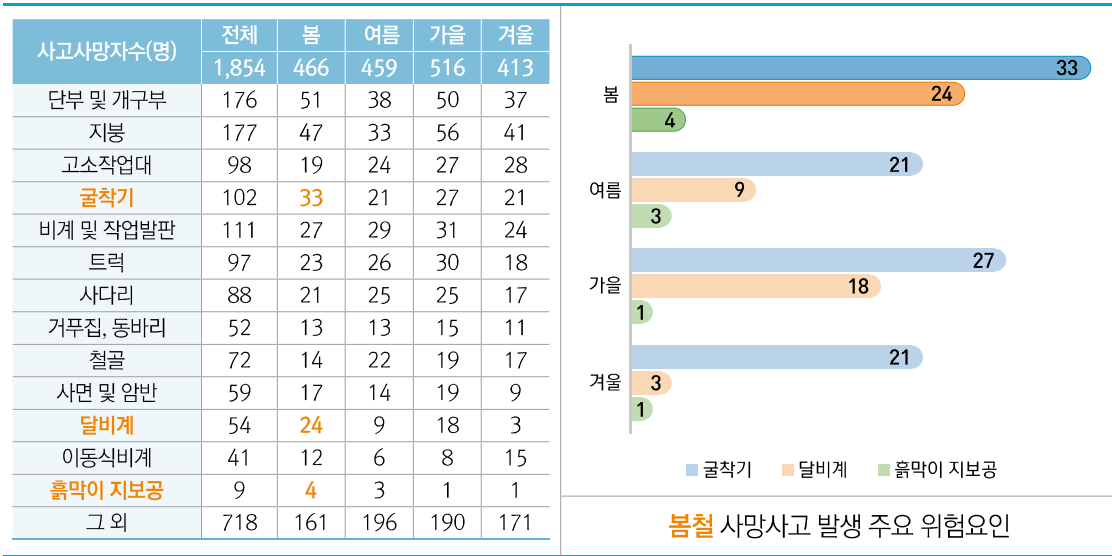
최근 5년간('21~'25) 계절별 사망사고 공사규모 현황



▶ 위험요인별 현황

- 단부·개구부 및 지붕 사고는 주요 발생 위험요인이고, 봄철에는 굴착기(33명), 흙막이 지보공(4명) 및 달비계(24명)로 인한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다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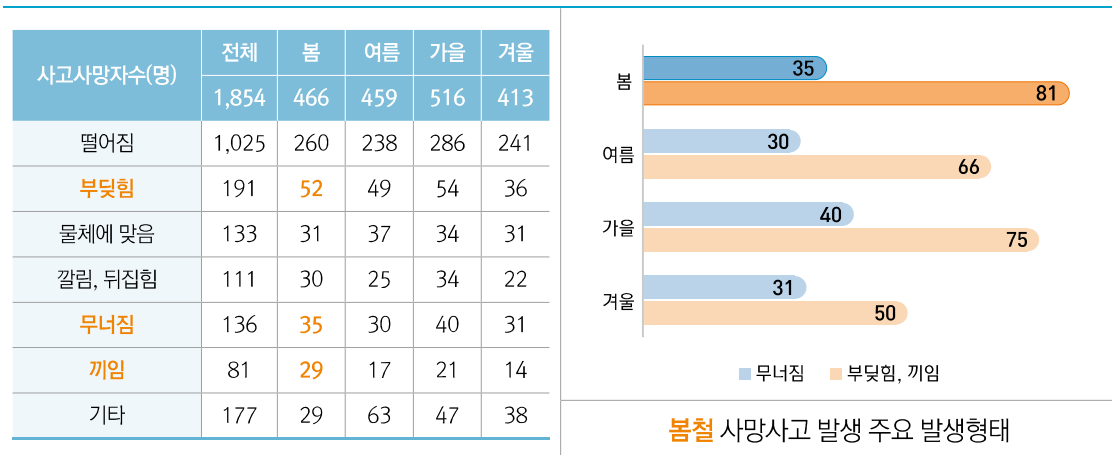
최근 5년간('21~'25) 계절별 사망사고 위험요인 현황



▶ 발생형태별 현황

-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상위를 차지하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봄철에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부딪힘·끼임(81명)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동결·융해 작용으로 지반이 연약화 되어 굴착면, 흙막이 지보공 등의 무너짐(35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1~'25) 계절별 사망사고 발생형태 현황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1. 굴착면 무너짐
2.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떨어짐
3. 지반 침하
4. 굴착기 끼임·부딪힘
5. 달비계 떨어짐
6. 지붕공사 떨어짐



3.1 굴착면 무너짐



이것만은 꼭!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으세요**

▶ 주요 사고유형

- 절·성토면 내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토사 무너짐**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지반 내부로 침투**하여 굴착면 활동력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무너짐**



▶ 굴착면 무너짐 예방대책

-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융해 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지반 내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천막을 설치**
-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및 이상여부 확인**
-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금지**
- **토석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 굴착 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 배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적치 금지**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사고사례 1 하수관 설치 후 대기 중 굴착사면 붕괴 [사망 1명, 부상 1명]

발생일시	2025. 4. 26. (일)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	------------------	------------	---------

재해개요	굴착 저면에서 하수관 설치 후 대기하던 중 굴착 사면이 붕괴로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
-------------	--

재해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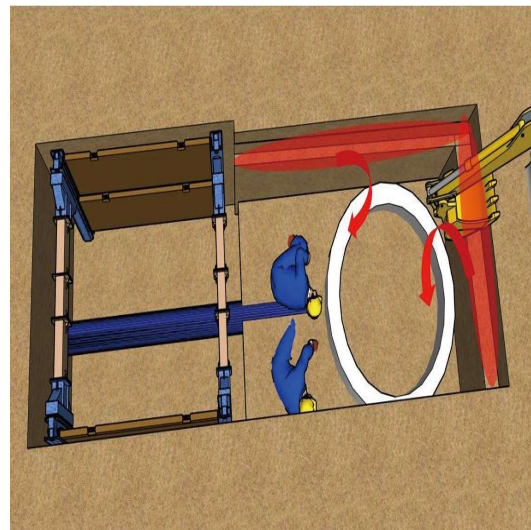


안전대책	<p>굴착 사전 조사 및 굴착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깊이 2m 이상 시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흙막이 형식 및 시공 범위 등을 사전에 수립 후, 공법 선정에 반영 - 흙막이 설치, 시공 순서, 출입 통제, 차량 관리 등 사전에 굴착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 후 작업자에게 전달·교육
	<p>흙막이 조립도 작성 및 절차 준수하여 흙막이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막이 설치 전 조립도 작성 및 검토하고 조건에 맞는 흙막이 자재 선정 후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 반영하여 절차 준수하여 흙막이 시공
	<p>굴착면 붕괴 위험구간 출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 등의 붕괴, 낙하의 위험 조치 전 굴착구간 내 출입통제 철저

사고사례 2 우수관로 연결 중 굴착 사면 붕괴 [부상 2명]

발생일시	2024. 11. 25. (월)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재해개요	우수관로 배관을 맨홀에 연결하던 중 굴착 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2명 부상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간이 흠막이 지보공 설치

- 관로공사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한 조립식 간이흠막이를 설치하여 굴착면의 붕괴 방호조치 실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흠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

굴착면 붕괴 위험구간 출입금지

- 토사 등의 붕괴, 낙하의 위험 조치 전 굴착구간 내 출입통제 철저

사고사례 3 사면 주변 이동 중 동결된 토사에 맞음 [부상 2명]

발생일시	2023. 1. 12. (목)	소재지	평택시 도일동
재해개요	굴착사면 주변 이동 중 사면 상부의 동결 토사가 붕괴되면서 낙하하여 맞아 2명 부상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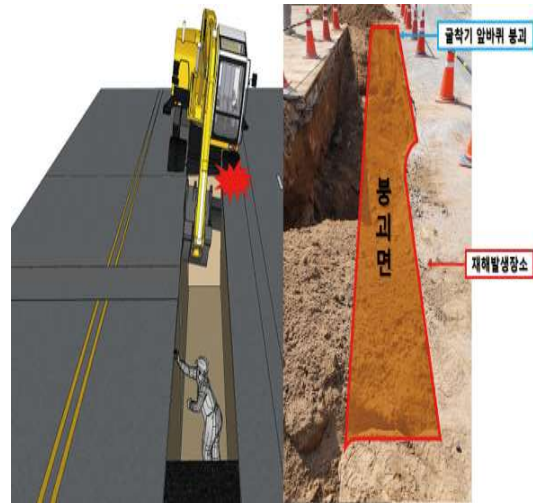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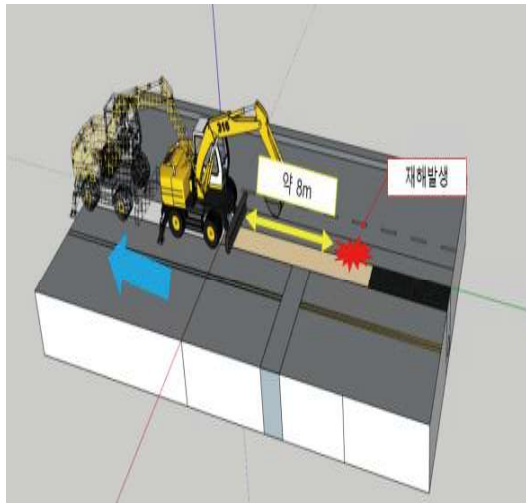
굴착 작업 시 사면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동결·융해가 반복되어 연약해진 지반을 굴착기로 굴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를 점검하고 관련 기준에 의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조치 및 통제 철거

사고사례 4 가스배관 청소 중 굴착 사면 붕괴 [사망 1명]

발생일시	2022. 3. 8. (화)	소재지	경남 창원군
재해개요	도시가스배관 청소 중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에 매몰되어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습윤한 사질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를 준수

간이 흙막이 지보공 설치

- 지하매설물, 작업장의 지형 등으로 인하여 수직으로 굴착해야 하는 경우 간이 흙막이 지보공 설치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 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사고사례 5 굴착상태 확인 후 승강하던 중 토사 무너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19. 2. 13.(수)	소재지	울산시 남구
------	-----------------	-----	--------

재해개요	트렌치 굴착 저면에서 접지선을 연결하던 중 굴착법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1명 사망
------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지반 등의 굴착 시 붕괴위험방지 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기울기를 준수 - 흙막이 지보공(간이 흙막이 등)을 설치하여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p>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적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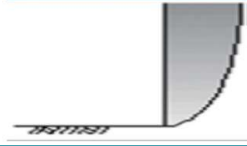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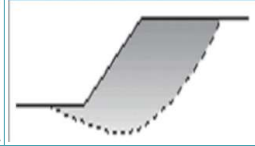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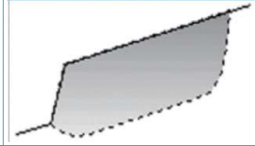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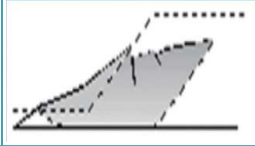
기술자료

굴착면 무너짐 방지 기술지원 검토사례

▶ **굴착면 무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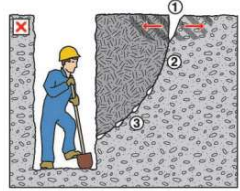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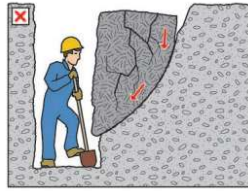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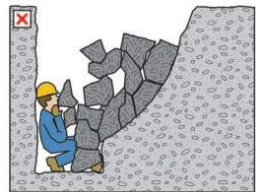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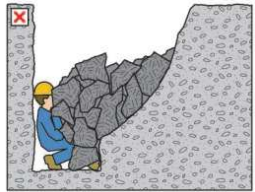
- 굴착면 무너짐은 지반의 종류, 지층조건 및 외부적 원인(강우, 하중변화 등)에 따라 다양
- 굴착면에서의 재해는 대부분 붕락(Falls) 및 활동(Slides) 형태로 발생

1 무너짐 유형

붕락(Falls)	활동(Slides)		
	원호 활동	직선 활동	복합곡선 활동
			
전단변위 없는 빠른 붕괴로 재해발생 위험이 매우 큼	연약층 및 비교적 균질한 사면에서 주로 발생	사질토 굴착 시 얇은 파괴로 주로 집중 강우 등 우기시 발생	복합지반 굴착 시 파괴, 상부에 얇은 연약층 존재 시 발생

2 붕락의 특징 및 발생원리

- 전단변형이 거의 없거나 작은 면을 따라 발생하는 낙하로 일반적인 기울기가 급한(75° 이상) 굴착면에서 발생
- 붕락(Falls)은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대피할 시간이 없음

[Step 1] 인장균열, 유출수 발생	[Step 2] 붕락 발생
	
① 인장균열 또는 침하 발생 ② 활동면 발생 ③ 활동면의 유출수 관찰	유출수와 함께 붕락 발생
[Step 3] 근로자 매몰	[Step 4] 심각한 부상 및 질식
	
벽 면과 붕락된 토사 사이에 근로자 갇힌 후 압착 발생	근로자 심한 부상 및 질식

③ 원호활동의 특징 및 발생원리

- 일반적으로 원호활동은 전단변형이 집중되는 비교적 얇은 활동면을 따라 토체가 미끄러져 발생
- 원호활동은 굴착면의 경사, 지반의 강도 등에 따라 굴착면 내 활동, 굴착면 선단활동, 굴착면 저부활동 등으로 구분
- ➔ 굴착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무너짐이 비교적 느리게 발생되어 무너짐 직후 파악이 다소 용이한 특징을 갖음

■ 원호활동의 종류

사면내 활동	사면선단 활동	사면저부 활동
사면기울기가 급하고, 지반의 강도(점착력)이 큰 경우 발생	일반적으로 굴착면과 하부지반이 균질한 경우에 발생	사면기울기가 완만하며 굴착면 하부에 연약지반(포화점토)이 존재할 때 발생

■ 발생원리

[Step 1] 사면 상단부 인장균열	[Step 2] 선단부 부풀음	[Step 3] 선단부 허빙 및 상부 침하
① 인장균열 발생 : 눈에 띄는 활동면 없음 → ② 배면 침하 및 선단 부풀음 발생 → ③ 선단부 허빙 및 전체활동 발생		

④ 굴착면 재해사례

일반 사면	트렌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조성, 옹벽설치를 위한 임시 굴착사면 붕괴 ·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지반강도가 큰 지반에서의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임시 트렌치 굴착사면의 붕괴 · 트렌치 굴착 배면지반의 인장균열 발생 후 매우 빠른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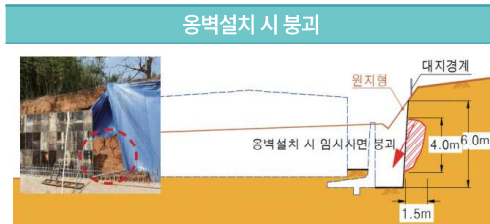
- 재해 관련 무너짐 형태는 붕락(Falls)으로 옹벽, 석축 등 설치 시 임시 굴착면 및 트렌치 무너짐이 대부분
- 수직굴착 시 붕락(Falls)은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무너지므로 근로자가 대피할 시간이 없음
- ➔ 기울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또는 반드시 흙막이, 방호망 등 설치 후 작업

▶ 무너짐 원인 및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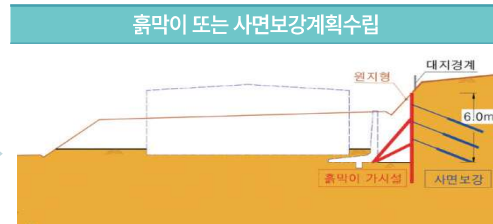
- 적절한 기울기 및 흙막이 가시설 등 굴착면 보강공법 등의 방호시스템을 이용해 굴착면 무너짐을 방지
- ◉ **옹벽 설치, 단지 조성 시 또는 트렌치 굴착 시 임시 굴착면의 경우에도 반드시 방호시스템 적용 필요**

① 일반 굴착면 굴착

■ 옹벽, 석축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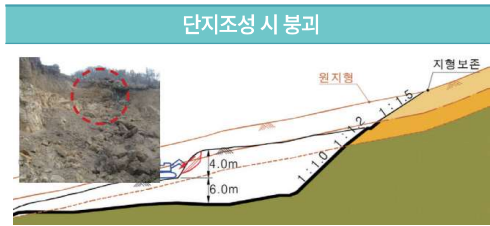


- 풍화토~풍화암 지반의 전형적인 붕락(Falls)형태의 재해
- 옹벽 거푸집 설치 시 임시사면(수직)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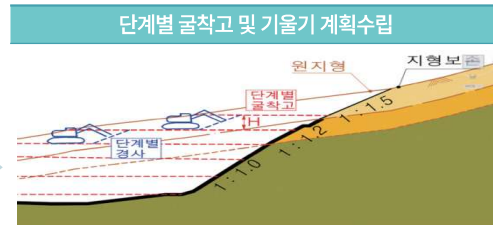


- ▶ 적용 기울기의 사면 안정성 반드시 점검
→ 안정성 미확보 시 흙막이 설치 또는 사면보강

■ 주택, 골프장 등의 단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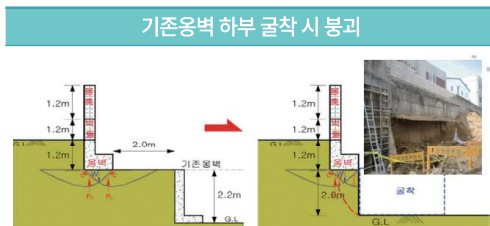


- 풍화토~풍화암 지반의 임시사면 굴착 시 붕락(Falls)형태의 재해
- 단지조성을 위한 임시사면(1:0.59) 굴착 및 상차 시 사면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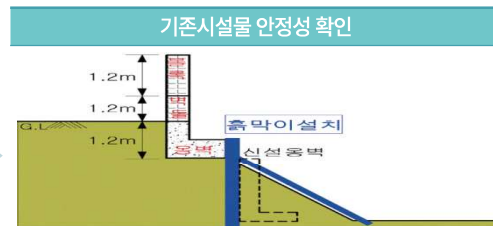


- ▶ 적용 기울기의 사면 안정성 반드시 점검
→ 토층별 적정 굴착고 및 기울기 계획 수립

■ 기존 시설물 근접굴착



- 기존 RC옹벽 근접굴착 시 지지력 부족에 의한 붕락(Falls)
- 기존 RC옹벽 보강을 위한 지반굴착 시 사면붕괴



- ▶ 굴착 전 기존옹벽 안정성 반드시 점검
→ 기존 옹벽 지지력 및 침하(침하) 해석

- (옹벽설치 및 단지조성) 임시 굴착면 안정성 확보
- (근접굴착) 기존구조물 지지력/침하 안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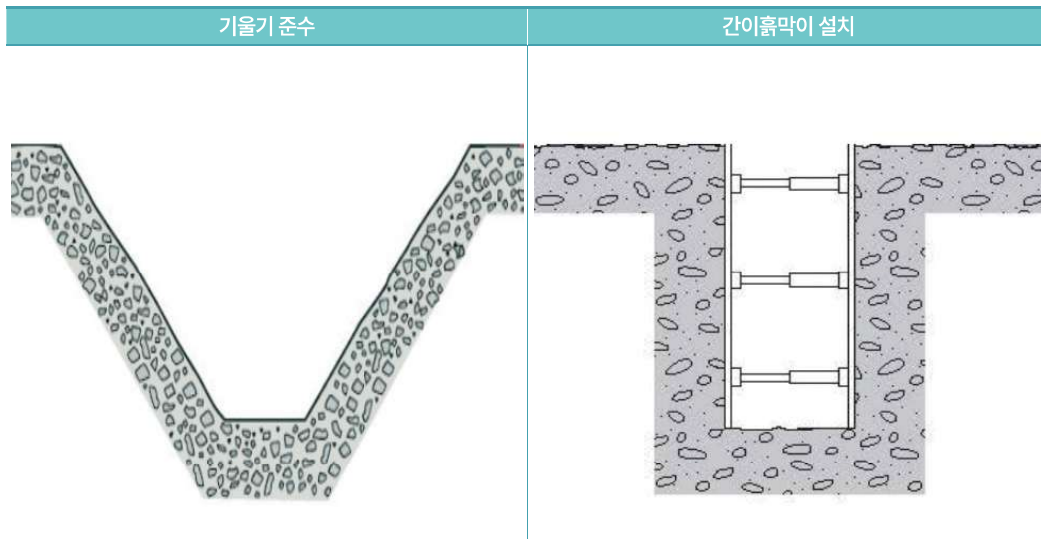
- 안정성 검토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안정성 검토에 따른 **굴착높이 준수**
- **기존구조물 침하 및 균열의 허용기준 준수**

② 트렌치 굴착

■ 일반 굴착면 굴착



· 트렌치 굴착사면의 안정성 미확보로 사면 붕락(Falls)에 의한 재해 발생
 → 포장층 하부 트렌치 굴착사면의 경우 인장균열 및 침하 등 붕괴발생 징후 파악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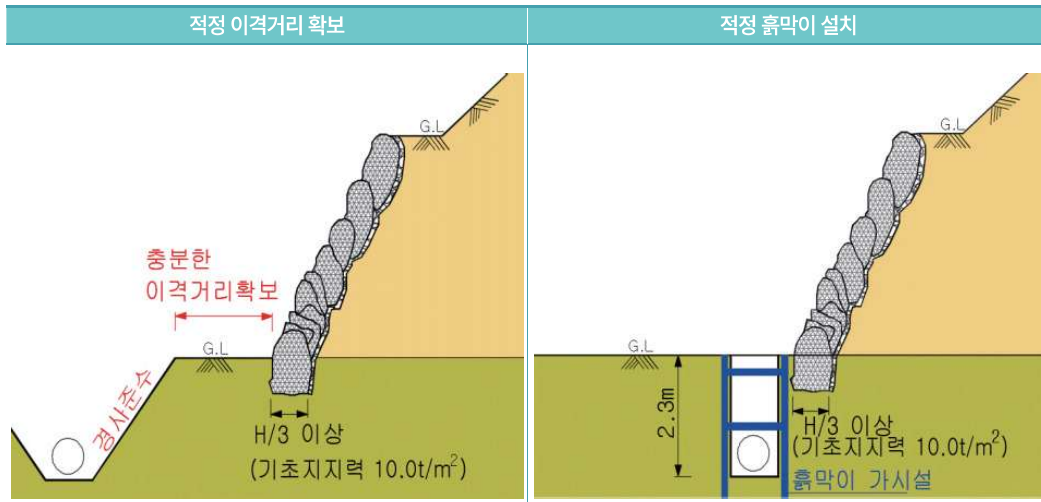
▶ 깊이 1.5m이상시 적정 기울기 확보하거나 또는 간이흙막이 적용 필요
 → 안전율 기준을 고려한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또는 흙막이 안정성 확인 필요

- (굴착면 굴착) 임시 굴착면 안정성 확보
- 안정성 검토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이격거리 확보 또는 흙막이공법 적정성 검토

■ 기존 구조물 근접굴착



· 조경석 및 보강토 옹벽 등 지지력 및 침하측면의 문제가 큰 구조물 근접굴착 시 재해발생 사례
 → 근접굴착에 따른 조경석 및 보강토 옹벽 기초지반 침하 과다로 인한 기존구조물 붕괴



- ▶ 기존시설 안정성확보 가능한 적정기울기 및 이격거리 적용 필요
- ▶ 기존시설의 지지력, 침하 측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흠막이 적용 필요
 → 굴착 후 설치되는 간이흠막이는 부적합(흠막이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붕괴발생 가능성 큼)

· (구조물 근접굴착) 지지력/침하 안정성 확보 → · 안정성 검토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이격거리 확보 또는 흠막이공법 적정성 검토

●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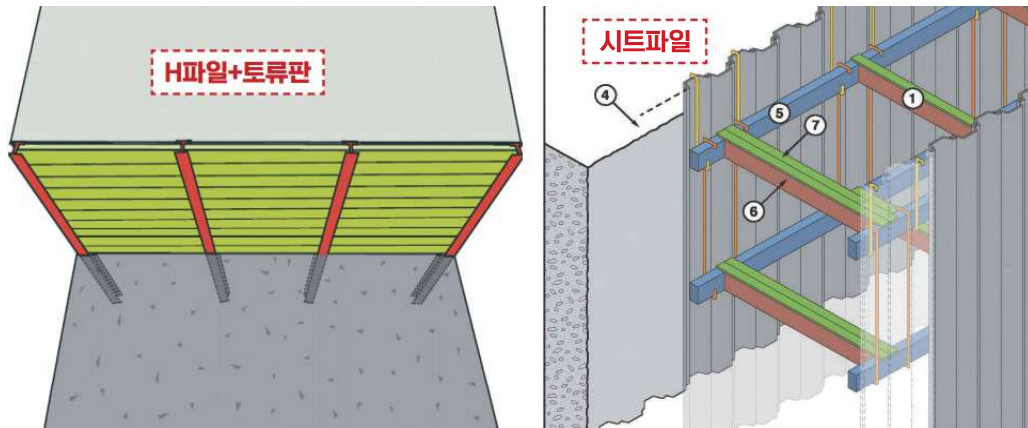
상부 되메움토 붕괴



· 기존 매설물에 근접한 트렌치 굴착사면으로 매우 느슨한 기존매설물 되메움토의 자립성 저하에 따른 붕괴
 → 국내에서 주요 적용되는 SK판넬(간이흙막이)은 기존매설물과 간섭시 적용 곤란



적합한 흙막이 가시설 설치



▶ 기존매설관 및 맨홀 등과 간섭으로 SK판넬(간이흙막이)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공 가능한 흙막이 적용
 → H-pile+토류판 공법, 시트파일 공법 등 기존매설물 간섭 없이 시공 가능한 흙막이 시공

· (매설물 근접굴착) 기존 되메움토 안정성 확보 → · 간이 흙막이 등 흙막이 가시설공법 적정성 검토

■ 추가하중 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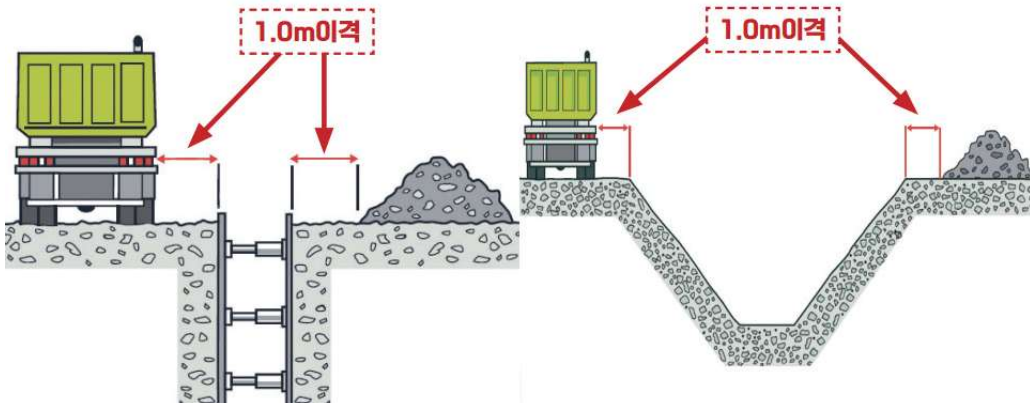
굴착토 등 하중에 따른 붕괴



- 굴착면과 이격없이 굴착토 적재에 따른 하중증가로 트렌치 굴착 사면 붕괴재해 사례
→ 굴착토 등 추가되는 재하하중에 의한 트렌치 굴착사면 전단응력 증가로 트렌치 자립 곤란



굴착토 및 장비 등 최소이격거리 확보



- ▶ 굴착토 및 장비하중을 고려하여 사면 및 흙막이 안정성 확보 여부 검토 필요
→ 굴착토 및 장비하중 등의 하중을 반영하였다더라도 사면 및 흙막이 단부에서 최소 이격거리 1.0m 준수

- (추가하중 재하) 지지력/침하 안정성 확보 ➔ • 굴착토, 장비 등 **최소이격거리(1.0m)** 확보

▶ 굴착면 무너짐 관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 ① 굴착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점검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①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는 [별표11] 기준 또는 건진법 제44조 제1항을 준수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또는 흙막이 등 적절한 붕괴 방지 조치
 - ② 비가 올 경우을 대비하여 측구 설치, 경사면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 방지
-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① 굴착작업 시 토사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 ① 매설물, 조적벽, 콘크리트벽, 옹벽과 근접굴착시 또는 구조물 파손 우려시 건설물 보강 또는 이설
 - ② 굴착에 의해 노출된 매설물 등 파손으로 근로자 위험해질 경우 방호조치
 - ③ 매설물 등 방호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휘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 제25조(대지의 조성) 손계의 우려가 있는 성토 또는 절토 사면 기울기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 설치(다만,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 그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 방지
 3. 토지 1.5m 이상 굴착시 경사도가 [별표7] 이하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흙막이 설치

■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기준]

- 사면은 반드시 기준안전율(고시)을 만족하도록 설계
- (사면보강) 앵커, 네일, 록볼트, 엄지말뚝, 옹벽 등 다양한 보강공법 설계기준 제시
- (사면보호) 굴착면 녹화, 슛크리트 뿔어붙이기, 격자블록 및 돌붙이기 등 다양한 보호공법 설계기준 제시

-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기울기나 흙막이 등 조치
- 옹벽 설치 시 등의 임시 굴착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적용하고 안정성 해석 후 필요시 보강계획 수립
- 기존구조물 근접 굴착 시 근접구조물의 안정성(지지력 및 침하측면) 해석

3.2 흠막이 지보공 무너짐·떨어짐



이것만은 꼭!

작업 전 **지반 상태의 변화** 및
흠막이 지보공 이상유무를 **점검**하세요

▶ 주요 사고유형

- 동결·융해 반복에 의한 지반약화로 **흠막이 지보공 무너짐**
- 흠막이 지보공 용접작업을 위해 **빔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흠막이 지보공 무너짐·떨어짐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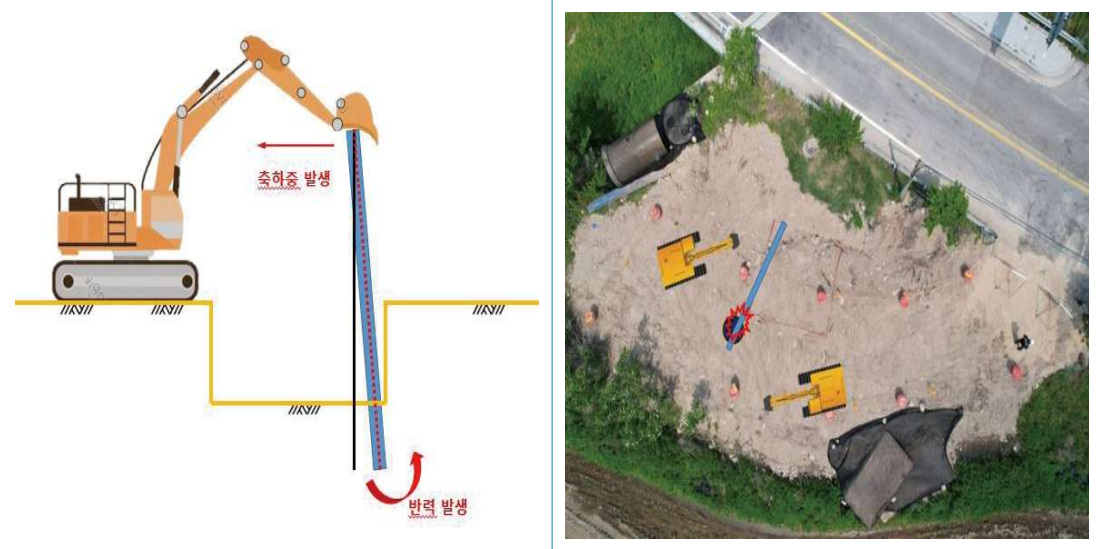
- 흠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구조 검토**한 후 **조립도**에 따라 조립
- 작업 전 흠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탈락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 값 이상 유무**를 확인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점검
- 굴착작업 중 **소단확보 및 지보공 적기설치 등 토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 흠막이 배면에 **중량물(차량운행 또는 굴착토사 등) 적치금지**
- 표면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배면에 **배수로 설치 또는 천막덮기**
- **토석 및 흠막이 지보공의 붕괴**가 우려되는 장소는 **출입금지 조치**
- 흠막이 지보공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 철저



사고사례 1 간이 흙막이 수직 부재가 전도되어 맞음 **[사망 1명]**

발생일시	2023. 6. 2. (금)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재해개요	맨홀 시공을 위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 수직 부재 근입 후 수직 부재가 전도되며 맞아 1명 사망		

재해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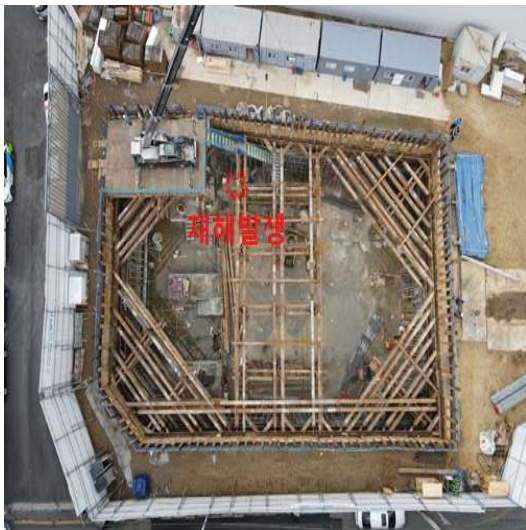


안전대책	<p>⚠️ 흙막이 부재 자립을 위한 안정성 검토 철저</p> <p>- 부재 설치 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대 설치, 근입기준, 지지로프 사용 등 안정성을 검토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에 반영 및 작성 후 작업</p>
	<p>⚠️ 흙막이 조립도 준수</p> <p>- 흙막이 조립도 작성 후 조립도에 따라 흙막이 공사를 수행하고 부득이 조립 방법, 순서 등이 변경될 경우 조립방법, 순서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p>

사고사례 2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 중 떨어져 부재에 깔림 [사망 1명]**

발생일시	2022. 4. 29. (금)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재해개요	흙막이 지보공 해체 작업 중 로더가 해체된 부재를 내리다 흙막이 지보공과 충돌, 재해자가 떨어진 후 낙하한 부재에 깔려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방지조치 철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체결을 지도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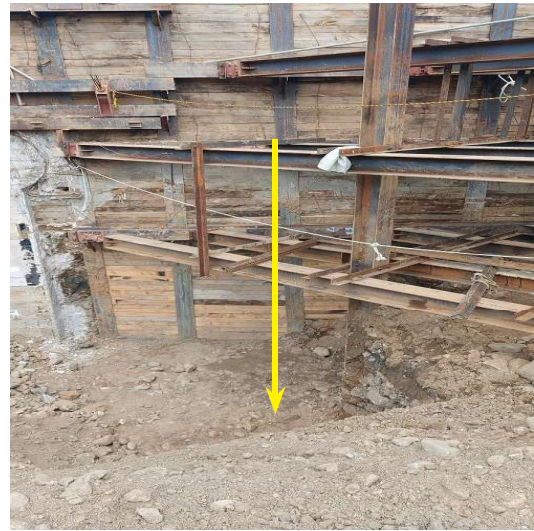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장비(차량계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해체하는 경우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지도·관리

사고사례 3 흙막이 지보공 위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1. 3. 18. (목)	소재지	경북 김천시
재해개요	터널 흙막이 지보공 보강용 앵글 설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추락 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및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 흙막이의 띠장 및 버팀대와 같이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p>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및 걸이 상태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의 체결상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흙막이 해체작업 순서 및 방법, 떨어짐 방지조치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교육 및 주지시킨 후 작업 실시

사고사례 4 **흙막이 지보공 위 이동 중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0. 5. 26. (화)	소재지	전주시 덕진동
재해개요	흙막이 지보공(코너스트럿 6단) 위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굴착 저면으로(h≒8m)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추락 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및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 흙막이의 띠장 및 버팀대와 같이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p>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관리

기술자료 ①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 계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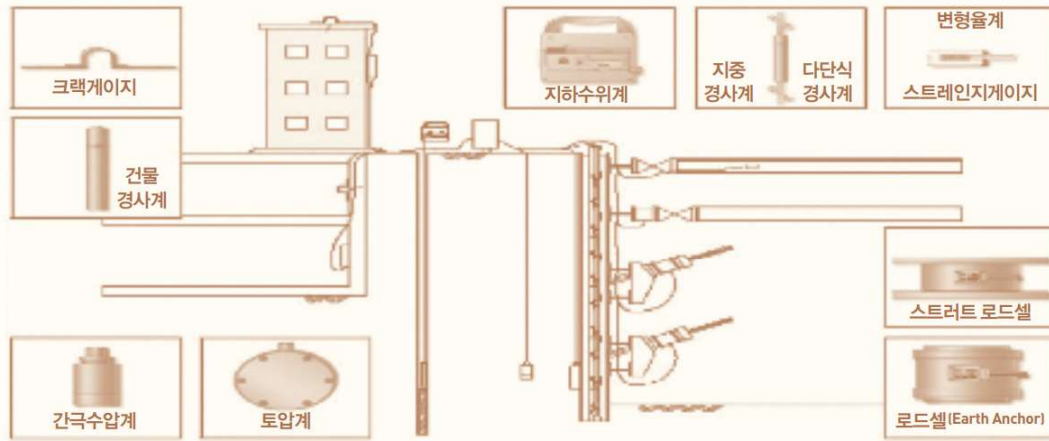
* 설계, 시공상의 오차를 측정

- 계획 시 조사 결과의 오류에 의한 설계상 결점을 시공 중 발견하기 위한 수단
- 굴착공사가 지반 및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
- 계측자료를 분석하여 설계의 과대, 과소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
- 계측자료를 역해석하여 가정된 지반조건을 적절하게 조정
-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향후 합리적인 설계의 도출

▶ 측정 위치별 계측 기기의 종류와 측정 목적(KOSHA GUIDE)

측정위치	측정항목	사용 계측기	육안관찰	측정목적
흙막이 벽체	측압	· 토압 · 수압	· 토압계 · 수압계	· 측압의 설계값/계측값 비교 · 주변수위, 간극수압 및 벽면수압 관련성 파악
	변형	· 두부변위 · 수평변위	· 트랜스, 추 · 경사계	· 변형 허용치 이내여부 파악 · 토압, 수압 및 벽체변형 관계 파악
	· 벽체의 응력	· 변형률계	· 주변지반 균열, 침하누수	· 응력분포를 계산해 설계시 계산된 응력과 비교 · 허용응력/계측값 비교(벽체 안전성 확인)
버팀대 어스앵커	· 축력 · 변형률 · 온도	· 하중계 · 변형률계 · 변위계 · 온도계	· 버팀대 평탄성 · 볼트의 조임상태	· 버팀대 및 어스앵커 작용하중 파악 · 설계 허용축력과 비교
굴착지반	· 굴착면 변위 · 임의적 변위 · 간극수압 · 지중 수평변위	· 지중경사계 · 층별침하계 · 간극수압계 · 지하수위계	· 내부지반 용수 · 보일링, 히빙	· 응력해방에 의한 굴착측 변형과 주변지반 거동 파악 · 배면, 흙막이 벽체 및 굴착저면의 변위관계 파악
주변지반	· 지표/지중 수직 및 수평 변위 · 간극수압	· 지중경사계 · 층별침하계 · 지표침하계 · 지하수위계	· 배면지역 균열, 침하 · 도로연석, 블록 등 벌어짐	· 허용변위량/계측값 비교 · 굴착/배수에 따른 침하량 및 침하범위 파악
인접건물	· 수직변위 · 경사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 · 균열계	· 구조물 균열 · 구조물 기울어짐	· 굴착 및 지하수위 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기존 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파악
유독가스 수질오염	· 탄산/메탄가스 · 수질오염	· 가스탐지기 · 수질시험	-	· 굴착 구간 가스발생 확인 · 지반개량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확인

▶ **계측기 별 측정 빈도 예시**(한국지반공학회)



계측항목	측정시기	측정빈도	비고
지하수위계	설치 후	1회/일, 1일간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2회/주	우천 1일 후 3일간
	공사 완료 후	2회/2주	연속측정
하중계	설치 후	3회/일, 2일간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2회/주	다음 단 설치 시 추가 측정
	공사 완료 후	2회/주	다음 단 해체 시 추가 측정
변위계	설치 후	3회/일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3회/주	다음 단 설치 시 추가 측정
	공사 완료 후	2회/주	다음 단 해체 시 추가 측정
지중경사계	Grouting 완료, 4일 후	1회/일, 3일간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2회/주	
	공사 완료 후	2회/주	
건물경사계	설치 후 1일 경과	1회/일, 3일간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2회/주	
	공사 완료 후	2회/주	
지표침하계	설치 후 1일 경과	1회/일, 3일간	초기치 선정
	공사 진행 중	2회/주	
	공사 완료 후	2회/주	

* 측정 빈도는 경우에 따라 조정·수행하며, 특히 집중호우, 해빙기와 같이 급속한 변위가 진행될 때에는 빈도를 높여 수시로 측정

▶ 흙막이 작업 흐름도



기술자료 ②

흙막이 지보공(Strut) 설치 불량 사례

과다굴착에 의한 흙막이벽체 및 부재 변형발생



과다굴착에 의한 부재 변경



과다굴착에 의한 사면 유실발생



끼움 플레이트 미시공



스티프너 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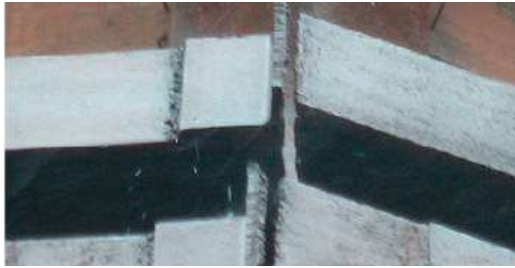
취약구간 띠장미폐합



띠장 연결부 용접불량 I



띠장 연결부 용접불량Ⅱ



지보공 상부 자재적재 불량Ⅰ



지보공 상부 자재적재 불량Ⅱ



절취 사면 단부 자재적재 불량



흙막이벽체 뒤채움 부실로 인한 균열



지하수 유출로 토사 유실



토류판 배면 지반 함몰



되메우기 지연



끼움재 미설치



토류판 손상



스티프너 미설치



띠장 연결조치 불량



강선 Slip 발생



토압에 의한 대좌 파괴 및 띠장 변형



대좌 미설치



뒷채움 미실시



3.3 지반 침하



주변 지반 및 지하매설물, 구조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징후**를 **점검**하고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 주요 사고유형

- 동결·융해 반복 따른 **지반약화**로 **지하매설물 파손** 및 **건설기계 넘어짐**
-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지지대 **무너짐·변형**



▶ 지반침하로 인한 넘어짐·무너짐 예방대책

- 현장 주변지반, 인접건물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사전조사**
-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안전상태 점검**
-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하부에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는 등 지반 지지력 확보
- **유도자 배치** 및 **부동침하, 갓길붕괴** 방지를 위한 연약구간 **지반다짐** 등 조치
- 공사용 차량,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 방지를 위해 **받침목·갈판 설치**
- 지하매설물 파손, 공사장 주변 축대나 옹벽 무너짐 및 지반침하 등 위험요인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작업자 접근을 통제**



사고사례 1 펌프카가 전도되어 불에 맞고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4. 17. (목)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재해개요	벽체 타설작업 중 펌프카의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지반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어 불에 맞아 기초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지반 보강 등 장비 전도방지조치 철저

- 지반이 장비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지반 치환·보강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 아웃트리거는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확장 및 지지판을 설치하, 필요 시 받침목 보강 등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설치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 전 장비 설치 지형 및 지내력 상태 등을 사전조사 하여 작업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
- 장비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주지

사고사례 2 타설 중 지반붕괴로 장비와 굴러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4. 6. 27. (목)	소재지	강원 홍천군
재해개요	타설 작업 중 지반이 붕괴되어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함께 아래로 굴러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지반 보강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지반 보강 등 지반의 붕괴에 대한 조치 후 작업 - 지반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는 구조물의 변형, 포장면의 균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 및 보강조치 등 유지관리 철저
------	--

사고사례 3 지반단부 붕괴로 굴착기가 넘어져 깔림 [사망 1명]

발생일시	2021.4.2. (금)	소재지	경남 창원군
------	---------------	-----	--------

재해개요	굴착기 버킷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던 중 지반 단부가 붕괴 되어 굴착기가 넘어져 운전석에서 이탈된 운전자가 깔려 1명 사망
------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지반침하 및 붕괴 방지 조치 철저</p> <p>- 성토지반 단부 등 지반 침하·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장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의 침하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유도자 배치</p>
	<p>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p> <p>- 운행경로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p>

사고사례 4 **지반침하로 펌프카 전면부가 기울어 불에 맞음 [사망 1명]**

발생일시	2019.5.28. (화)	소재지	동해시 추암동
-------------	----------------	------------	---------

재해개요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반침하로 펌프카 아웃트리거 접지부가 지반 속으로 꺼지며 앞으로 기울어져 불 선단에 맞아 1명 사망
-------------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지반침하 및 붕괴 방지 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연약지반 제거 및 잡석 치환, 다짐 등의 지반 침하 방지, 아웃트리거 접지부 받침 설치 등 전도방지 철저
	<p>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연약지반 침하방지 등 작업 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준수

3.4 굴착기 끼임·부딪힘



이것만은 꼭!

굴착기에 작업자 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해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세요

▶ 주요 사고유형

- 후진하는 굴착기 후면에 작업자 **부딪힘**
- 지반의 부동침하로 인해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며 이탈된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임**



▶ 굴착기 끼임·부딪힘 예방대책

- 작업 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굴착기 운전원은 **좌석안전띠**를 항상 **착용**
- 작업 중인 굴착기에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 배치**
- 굴착기에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굴착기의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작동상태 **점검**
- 굴착기 **버킷 등 작업장치** 교체 시 이탈방지용 **안전핀 체결**
-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 시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사고사례 1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림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2. 28. (금)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재해개요	환승통로에 설치되는 수직 지보재의 하부 받침대 제작(용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간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작업 시 작업회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와 근로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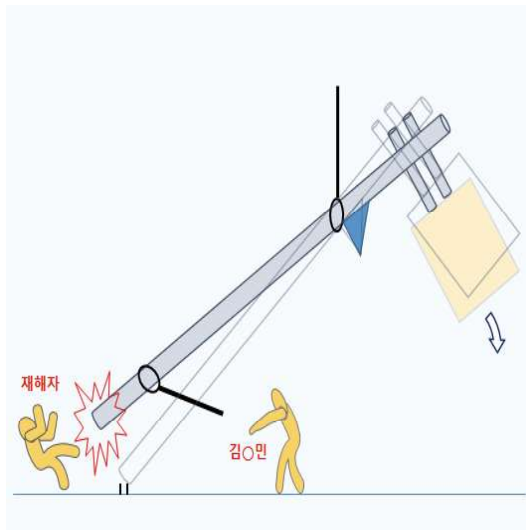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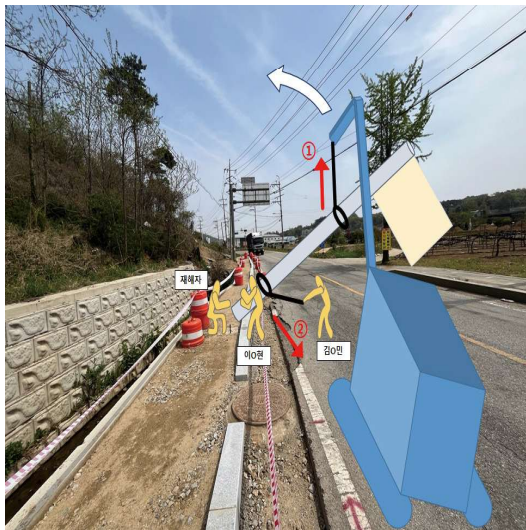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 철저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 작동여부 확인

사고사례 2 굴착기로 지주를 세우던 중 지주 하부에 맞음 [사망 1명]

발생일시	2024. 4. 13. (토)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재해개요	지주를 굴착기로 인양하여 수직으로 세우던 중 지주 상부가 기울며 들려지는 지주 하부에 맞아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 수립 후 준수

- 중량물의 형상이나 높이 등을 고려한 인양장비 선정, 인양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준수하여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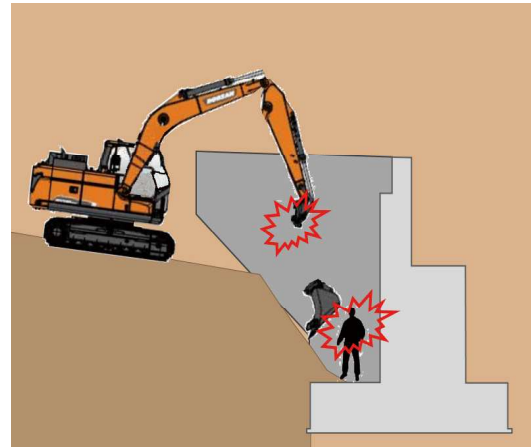
👷 작업지휘 및 신호, 통제 철저

- 장비 및 인양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 업무 지시
- 장비 및 인양 작업구간 주변(하부) 통제 철저

사고사례 3 굴착기에서 탈락한 버킷에 맞음 [사망 1명]

발생일시	2024. 3. 29. (금)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재해개요	굴착면에서 뒷채움을 위한 돌고르기 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버킷에 맞아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굴착기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렉 커플러와 버킷 등 작업 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정상 장착여부 확인하고 작업 장치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
	<p>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고 장비 유도자를 배체하여 장비가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되도록 지시
	<p>작업 전 작업계획서 수립 및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기 사용 작업 전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반경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근로자 교육 등 작업계획서 내용을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

사고사례 4 전진하는 굴착기 우측 앞파귀에 깔림 [사망 1명]

발생일시	2023. 3. 3. (금)	소재지	평택시 유천동
-------------	-----------------	------------	---------

재해개요	굴착기 후크에 수로관을 매달아 준 후 관로 부설 작업 위치로 이동하던 중 전진하는 굴착기의 우측 앞파귀에 깔려 1명 사망
-------------	---

재해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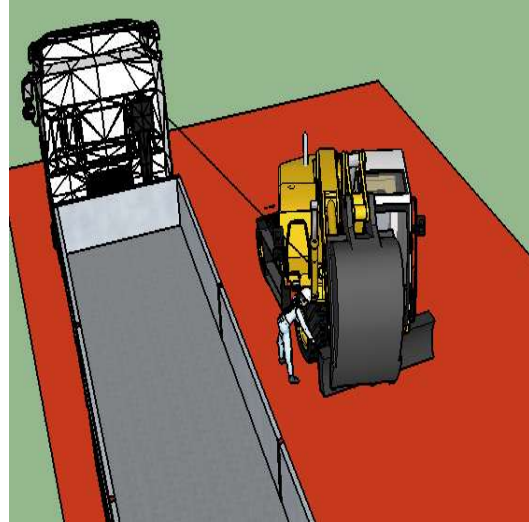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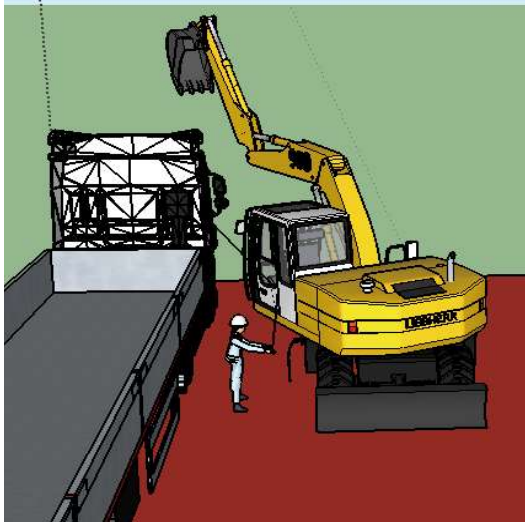


안전대책	<p>☞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장비 운행경로, 작업방법과 중량물의 인양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
	<p>☞ 차량계건설기계 작업에 따른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

사고사례 5 굴착기가 회전하여 모서리에 끼임 [사망 1명]

발생일시	2022. 2. 23. (수)	소재지	충남 서산시
재해개요	굴착기 내·외부를 청소하던 중 호스가 운전실 레버에 걸리면서 당겨져 굴착기 본체가 회전하여 모서리에 끼여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철저</p> <p>- 굴착기 청소 등의 작업을 위해 운전위치 이탈 시에는 갑작스러운 운전(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레버 등의 잠금조치를 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 철저</p>
------	---

3.5 달비계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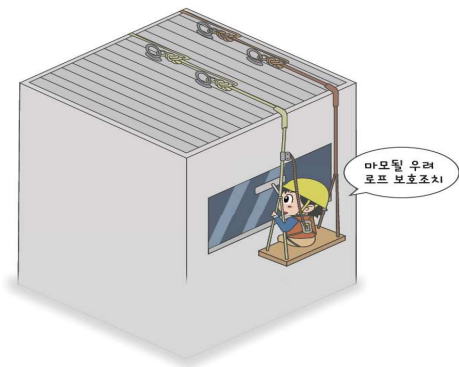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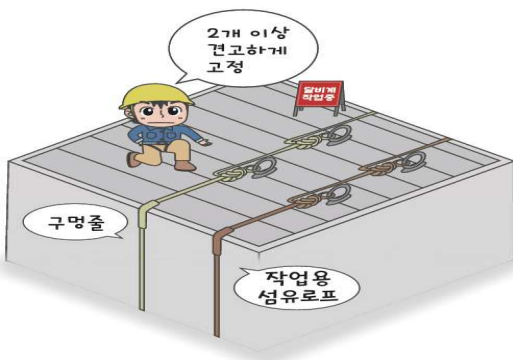
달비계 사용 작업 시 **떨어짐** 예방을 위해 **구명줄을 설치·체결**하고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세요

▶ 주요 사고유형

- 구조물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로프가 절단** 및 **마모되어 떨어짐**
- 작업 중 고정점에 결속한 **로프가 풀려 떨어짐**



▶ 달비계 떨어짐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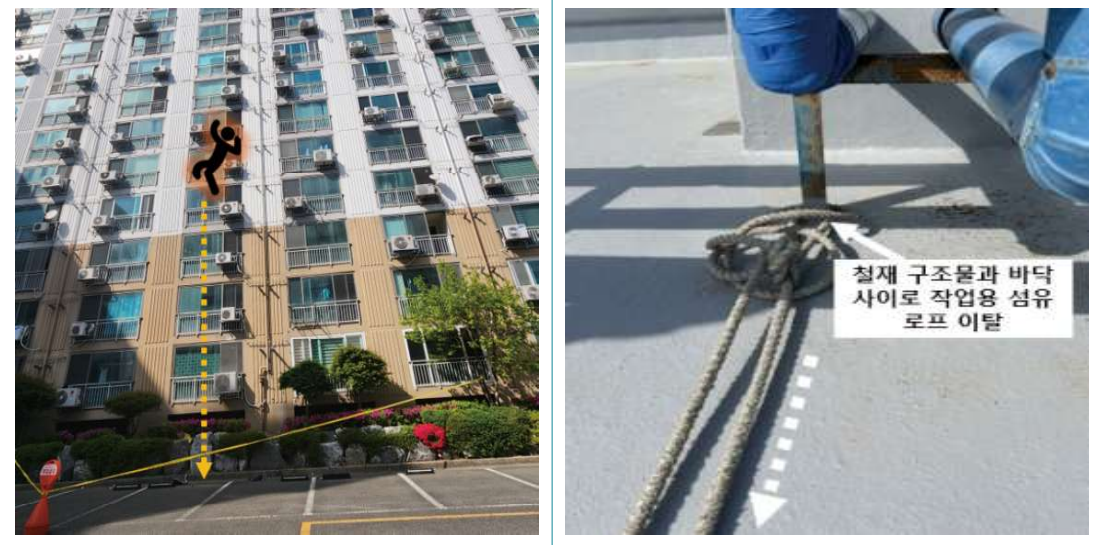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한 후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관리
- 작업용 로프는 매립된 **전용고리, 건축물의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작업용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
- 작업 중 로프의 절단이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설치

사고사례 1 달비계 작업 중 로프 고정점 이탈로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4. 24. (목)	소재지	울산 울주군
-------------	------------------	------------	--------

재해개요	배관용 철재 구조물에 로프 고정 후 작업 중 로프가 구조물과 바닥 사이로 이탈하여 떨어져 1명 사망
-------------	---

재해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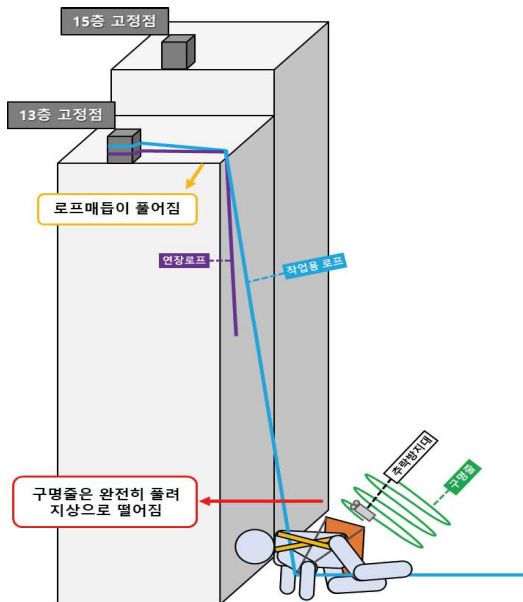


안전대책	<p>달비계 작업용 섬유로프 결속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용 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한 후 작업 - 결속할 고정점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견고한 고정점을 설치
	<p>구명줄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비계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구명줄을 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모 및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안전대는 구명줄에 체결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

사고사례 2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4. 8. (화)	소재지	전북 부안군
재해개요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에 탑승한 상태로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달비계 작업 전 로프 사전점검 및 보수 철저

- 작업 전 작업용 로프의 2개 이상 고정점 결속, 구멍줄의 고정점 결속 여부 등 로프 결속 상태와 매듭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 후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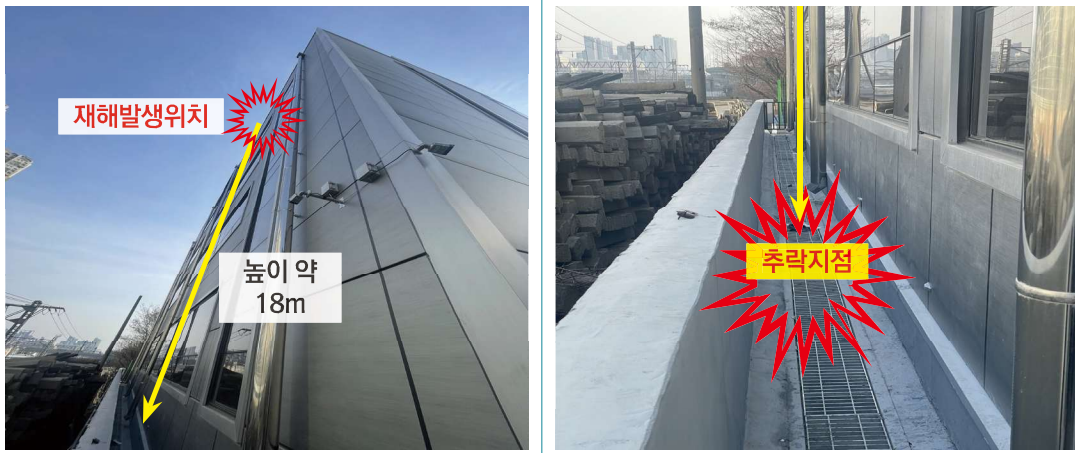
달비계 로프 결속 관리 철저

- 작업용 로프는 2개 이상의 고정점에 결속하고, 구멍줄은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하여 관리

사고사례 3 달비계 작업 중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2. 14. (금)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재해개요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작업대 모서리 로프가 파단되어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달비계 작업 전 로프 사전점검 철저	- 달비계 작업대 탑승 전 전체 로프의 손상 유무를 검사하고, 과도하게 닳거나 손상, 변형된 부분 발견 시 폐기 및 교체
	로프 파단 및 마모 위험이 있는 구간 보호조치 철저	- 모서리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로프가 파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덮개 설치 등 조치
	구명줄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구명줄을 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모 및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안전대는 구명줄에 체결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

3.6 지붕공사 떨어짐



이것만은 꼭!

지붕공사 중 **추락방지조치가 없어서** 추락하는 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사망** 사고 유형입니다



봄철 공사가 재개되면서 추락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업자는 주변을 살피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요 사고유형

- 지붕 개·보수작업 중 노후화된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면서 떨어짐
- 지붕에서 이동, 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단부에서 떨어짐



▶ 추락사고 예방대책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게 설치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도 어렵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후 착용 및 체결 관리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

사고사례 1 축사 지붕 위 이동 중 채광창 파손으로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4. 17. (목)	소재지	강원 횡성군
재해개요	축사 보강을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이동 중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어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추락 방호조치 철저

-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 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 및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하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및 체결하도록 지도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 준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 경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착용 관리 철저

사고사례 2 지붕 위 채광창 파손으로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5. 2. 6. (목)	소재지	경남 하동군
재해개요	공장 지붕 위에서 태양광패널 설치를 위해 인양된 자재 다발 하역 작업 중 지붕 위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추락 방호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및 체결하도록 지도 - 강도가 약한 지붕재나 채광창 구간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p>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 경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착용 관리 철저

사고사례 3 지붕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사망 1명]

발생일시	2024. 4. 4. (목)	소재지	전남 여수시
재해개요	지붕 판넬 설치 후 지붕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겹석을 밟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부로 떨어져 1명 사망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p>적정 가설통로 확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가 다른 두 지점을 통행해야 하는 경우 적정 위치에 가설계단 및 가설통로를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지도
	<p>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체결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하는 로프의 처지거나 풀리는 것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고 관련 설비의 이상유무 상시 점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IV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자료



4.1 해빙기 무너짐 주의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얼어붙은 지반이 녹아내릴 때...

해빙기 무너짐 주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사업주	작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지반 무너짐 위험방지 조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빙기 작업 재개 전 점검 실시☑ 지반 무너짐 위험방지 조치 이행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현장배송서비스(media.kosha.or.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2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01. 위험요인 파악 굴착장비 반입

- 반입 장비의 연결부, 기계장치 등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트럭에서 하역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장비의 후면부에 위험표지, 경광등 부착 확인
- 장비 하역시 운반트럭에 설치된 경사로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
- 장비 하역시 관리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하역
-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 바퀴 하부 구름방지용 썬기 설치 확인



02. 위험요인 파악 굴착

- 법면, 토질, 또는 지층 상태의 위험성 파악
- 작업구역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조치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 유지 점검
- 과굴착 여부 점검
- 굴착법면의 붕괴 위험성 파악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위험 표지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적절한 자격 유무 확인
- 굴삭기 버킷과 붐대의 연결부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확인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03. 위험요인 파악

굴착토사 인양, 적재

- 크래ichel 장비 반입 후 작업 전 사전점검
- 크래ichel 장비의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결속
- 크래ichel 장비의 버킷과 와이어 로프 체결부위가 견고한 연결철물로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 크래ichel 장비로 토사 인양시 굴착작업장 하부에 근로자를 통제할 신호수 배치
- 크래ichel 장비 운전자과 지하 굴착작업장의 신호수외의 신호체계 확립 점검
- 크래ichel 버킷 하강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크래ichel 장비 운전자의 자격유무 사전 확인
- 장비가 회전하는 지상 작업장소에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 크래ichel 장비의 회전하는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위험 표시 설치



04. 위험요인 파악

굴착토사 반출

- 굴삭기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를 유도하고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 굴착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대 설치 확인
- 세륜시설, 전기 판넬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의 설치 확인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연결부 등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토사반출 장소에 법면 붕괴 위험성 파악
- 운반트럭에 토사 과적재 금지
-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 버킷과 크레인으로 토사 인양시 토사를 적정하게 적재



4.3 건설기계 작업안전수칙

한 눈에 보는 산업현장 필수 안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 ① 트럭 | 이동구간 출입통제, 유도자 배치
- ② 굴착기 | 작업반경 출입통제, 유도자 배치
- ③ 고소작업대 |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④ 이동식크레인 | 허부 출입통제, 지반상태 확인
- ⑤ 탱크기-왕발기 | 작업반경 출입통제, 지반상태 확인
- ⑥ 콘크리트 펌프카 | 작업반경 출입통제, 지반상태 확인
- ⑦ 자재차 | 이동구간 출입통제, 과적 금지
- ⑧ 로더 | 이동구간 출입통제, 과적 금지
- ⑨ 롤러 | 이동구간 출입통제, 유도자 배치

2024-건설안전총서-30

OPEN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본 도서는 산업안전총서 제30호 건설안전총서
주제: 해빙기 2024 안전보건자료 294~304페이지입니다.

4.4 굴착기 작업안전(근로자)



굴착기 작업안전

2023-교육혁신실-825

근로자용

✔ **굴착기의 특성**

굴착기란 토사 등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장치를 부착해 파쇄·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차량계 건설기계이다.
(유사어: 굴착기)



※ 굴착기 제조사에 따라 구성·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굴착기 재해발생 유형**

주요 위험요인

-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부딪힘

- 잠금장치가 확실하게 체결되지 않은 버킷이 굴착기에서 떨어져 맞음



맞음

- 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운전자 깔림



깔림

✔ **재해사례**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 중 부딪힘



개요 사업장 내 베기물 및 자원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기 위해 굴착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선별 작업 중인 재해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원인

-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출입금지조치 미실시 및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대책

-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후진 시 후방주시 철저
- 굴착기 후진 경보음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직업자 교육



근로자용

굴착기 안전점검표

점검부서

점검자

점검일자

연번	검 검 내 용	검 검 과	조 치 사항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 확인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		
4	작업전에 전조등과 후방 영상장치, 후사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및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		
6	운전원 안전띠 착용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 체결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 금지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름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함		
12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		
13	봉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사용		

※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이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지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4.5 굴착기 작업안전(관리자)

2023-교육혁신실-824
관리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 **굴착기의 특성**

굴착기란 토사 등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장치를 부착해 파쇄·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차량계 건설기계이다.
(유사어: 굴삭기)

※ 굴착기 제조사에 따라 구성·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굴착기의 종류**

무한궤도식 크롤러 굴착기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 현장에 폭 넓게 사용됨

타이어식 휠 굴착기

타이어 지지 방식으로 인해 작업 시 안정성은 떨어지나, 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운반 트레일러 없이 작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작업과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 현장에 주로 사용됨

✔ **굴착기 안전장치**

구덩이 붓고 위험 속을 서다 조심히 작업에 임함

- **출입금지 및 접촉·충돌 위험방지**
 - 굴착기 붐, 암, 버킷 등의 선회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굴착기 기능점검**
 - 브레이크, 클러치의 정상작동 여부, 전조등,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 렉카몰리에 작업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안전핀 체결 확인

안전핀 체결

안전핀 체결 확인

안전핀 해제

고용노동부
인근보건공단

관리자용

굴착기 사고사례

☑ 굴착기 재해발생 유형

주요 위험요인

-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 잠금장치가 확실하게 체결되지 않은 버킷이 굴착기에서 떨어져 맞음

- 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운전자 깔림



부딪힘



맞음



깔림



화물 인양·운반 중 떨어지는 화물 등에 맞음

이동, 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져 깔림

이동, 작업 중 물에 빠져 익사

이동, 작업 중인 굴착기의 물, 버킷에 끼임·맞음

이동, 작업 중인 굴착기에 충돌·깔림

☑ 재해사례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 중 부딪힘



개요 사업장 내 폐기를 및 자원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기 위해 굴착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선별 작업 중인 재해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원인

-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출입금지조치 미실시 및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대책

-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후진 시 후방주시 철저
 - 굴착기 후진 경보를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작업자 교육

* 본 OPS는 동종제외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제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용




굴착기 점검항목

✔ **작업 시 안전수칙**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막친후 시 작업 중지**
-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 **제조사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용상 안전기준 준수**
 - 최대 작업반경·높이·깊이 등 작업범위, 등판능력, 인양 시 허용하중 등 작업 사양 및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주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굴착기 사용 금지**
 - 버킷, 포크, 브레이커 등 장치의 용도에 맞게 작업



버킷(굴착)



파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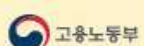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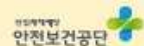



압쇄

- **승차석 외 위치 탑승금지**
 - 승차석 외에 버킷, 포크 등 굴착기 작업장치 탑승금지



- **작업·선회 반경 내 작업자 존재 여부 수시 확인**
 - 특히, 후진 시 후사경과 후방 영상장치 등을 통해 반드시 작업자 확인
 - 유도자가 배치된 경우 유도자의 유도에 따름
- **불 통의 급격한 조작·선회 금지**
 - 경사지 이동 중 붐을 회전하지 않는 등 이동·작업 중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



굴착기 안전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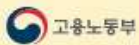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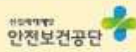
점검부서

점검자

점검일자

연번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 확인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		
4	작업전에 전조등과 후방 영상장치, 후사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및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		
6	운전원 안전띠 착용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 체결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 금지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름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킥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함		
12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		
13	봉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사용		

※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이차이되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지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점검사항



5.1 해빙기 공통사항

▶ 공통사항

항목	점검사항	적정	부적정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용수상태, 주위환경의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케이블관 등의 매설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반의 지질상태, 주변여건(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등) 고려 여부 - 흙막이 지보공 보강 시의 응력상, 시공상 적합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기울기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조건,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 굴착면 기울기 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지반 종류</th> <th>기울기</th> </tr> </thead> <tbody> <tr> <td>모래</td> <td>1:1.8</td> </tr> <tr> <td>연암 및 풍화암</td> <td>1:1.0</td> </tr> <tr> <td>경암</td> <td>1:0.5</td> </tr> <tr> <td>그 밖의 흙</td> <td>1:1.2</td> </tr> </tbody> </table> 	지반 종류	기울기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반 종류	기울기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막 덮개설치 등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 가설도로 상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정비 여부 -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지하철공사 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공판 표면상태의 이상 유무 - 복공판 요철부분 정비 및 필요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및 분기개소에 보온 조치 여부 - 매설물의 노출부에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굴착사면 무너짐

▶ 굴착사면이란?

- 기초공사 중 굴착으로 발생하는 사면 및 암반을 말하며, 토사 또는 암반이 무너지면서 매몰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트렌치 굴착]



[흙막이 설치]



[굴착사면]

사고 사례

- 사례 1 **흙막이 없는** 트렌치 굴착부 정리작업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
- 사례 2 굴착작업 중 **사면이 무너져** 굴착기와 함께 **매몰**
- 사례 3 **장마철 집중호우**로 쌓아 두었던 토사가 **무너짐**

핵심 안전수칙

▶ 굴착사면 및 암반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굴착면 기울기 준수(모래 1:1.8, 흙 1:1.2, 연암 1:1, 경암 1:0.5)
* 위 비율은 굴착면 깊이(높이) : 수평거리
- 예방 2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시 흙막이 설치,
2m 이상 굴착 시 지반조사 후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예방 3 비가 올 경우, 비닐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



5.3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떨어짐

▶ 흙막이 지보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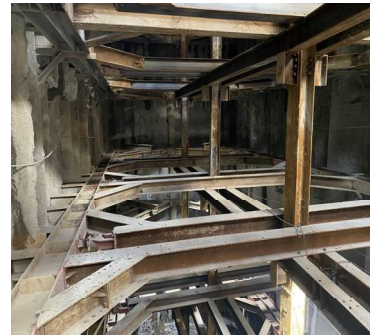
- 굴착작업 시,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법별 토류판, 어스앵커(Earth Anchor), C.I.P(Cast In place Pile), SCW, 조립식 간이 흙막이(SK/TS판넬) 등이 있습니다.



[어스앵커]



[C.I.P]



[스트러트]

사고 사례

- ▶ 사례 1 **조립도를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져** 작업자 매몰
- ▶ 사례 2 흙막이벽체 **뒷채움 부실**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무너짐**
- ▶ 사례 3 흙막이 지보공 **스트러트** **빔 상부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흙막이 지보공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조립도에 따라 설치
- ▶ 예방 2 계측장비 설치 및 이상 여부 모니터링
- ▶ 예방 3 흙막이 지보공 상단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무너짐·떨어짐 흙막이 지보공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등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조립도를 작성한다.			
자재 반입	3. H-beam을 인양하는 경우 2줄 걸이로 결속하고,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한다.			
	4.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조립 해체	6. 조립·해체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조립도 등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스티프너, 볼트 등 부속 자재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8.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버팀대, 띠장 등 하부에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9. 버팀대, 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한다.			
	10. 띠장, 버팀대 설치 및 용접 등 철골빔 상부의 작업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는다.			
	11. 설계도서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조립도에 명시된 설치 방법 및 순서 등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 복공판 상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 자재 인양을 할 때는 2줄 걸이,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합니다.

5.4 굴착기 끼임·부딪힘

▶ 굴착기란?

- 토사의 굴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파이프 등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장치를 부착하면 파쇄·절단작업 등이 가능하며, 중량물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굴착기도 있습니다.



[버킷 장착 굴착기]



[브레이커 장착 굴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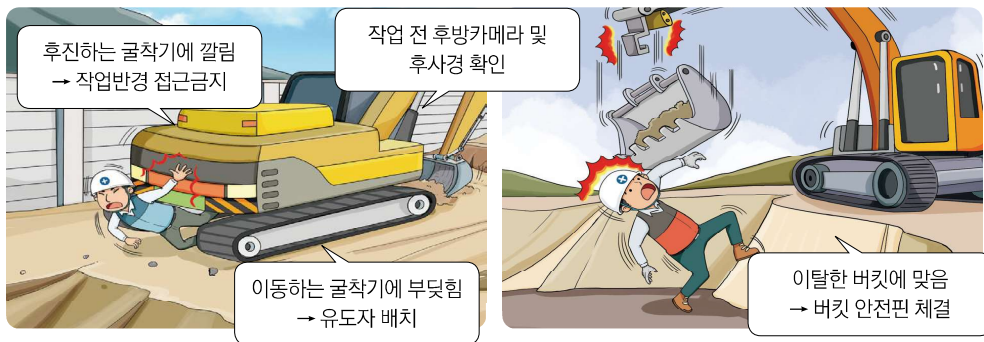
[크램셸 장착 굴착기]

사고 사례

- 사례 1 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던 작업자가 **부딪힘**
- 사례 2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차체에 운전자가 **깔림**
- 사례 3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핵심 안전수칙

▶ 굴착기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작업 전 후방카메라 및 후사경 확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 예방 2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 예방 3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체결



5.5 달비계 떨어짐

▶ 달비계란?

-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해 지붕 위 단단한 곳에 작업대(의자)가 달린 줄을 매달고, 작업발판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비계 * 주로 건물 외벽 도장·도색·청소 작업에 사용



[달비계 작업대]



[로프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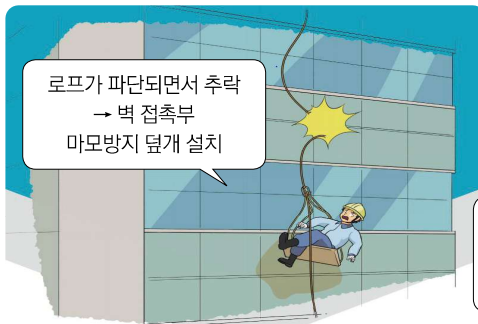
[로프 걸이용 고리]

사고 사례

- 사례 1 외벽 도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파단되어 떨어짐**
- 사례 2 외벽 보수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 사례 3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바닥으로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달비계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조치
- 예방 2 작업로프와 구명줄(안전대용)은 별개의 고정점에 설치
- 예방 3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시 부착



떨어짐 달비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작업대,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1-1. 꼬임이 끊어진 로프, 심하게 부식된 로프, 작업장소에 비해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3.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리감독자는 로프 및 작업대의 손상여부, 로프의 고정점과 고정방법 등을 확인한다.			
작업 안전	5.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한다.			
	6.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단단하게 결속한다. * 콘크리트 매립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7. 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한다.			
	8. 로프와 구명줄이 벽과 닿는 부분에는 보호덮개를 한다.			
	9.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며,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달비계에 탑승한다.			
	10.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에는 경고표지(예 : 달비계 작업 중)를 부착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달비계 로프는 전용 고리에 단단히 매듭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부착해야 합니다.
- 구명줄, 안전대 없는 달비계 작업은 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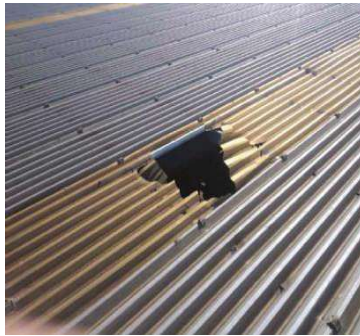
5.6 지붕공사 떨어짐

▶ 지붕공사란?

- 지붕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로 주로 ①공장 및 ②축사 지붕 개보수, ③태양광 설비 공사, ④신축 건축물 지붕 설치 등을 말합니다.



[창고 지붕(패널)]



[축사지붕(컬러강판)]



[신축 공장지붕(패널)]

사고사례

- ▶ 사례 1 지붕에서 이동하다가 **뺨은 넓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짐**
- ▶ 사례 2 경사진 지붕에서 용접하다가 **미끄러져 지붕 아래로 떨어짐**
- ▶ 사례 3 지붕 강판 교체작업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지붕공사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채광창 덮개 설치
- ▶ 예방 2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 중 안전대 착용
- ▶ 예방 3 지붕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 30cm ↑) 설치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부록

핵심안전수칙 자율점검표



떨어짐 단부·개구부 주변 작업 시 안전수칙

▶ 단부 및 개구부란?

- 단부(斷部) : 작업발판,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
- 개구부(開口部) :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벽면, 슬래브 바닥 등에 자재 운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해 바닥 등에 만든 뚫린 부분



[슬래브 단부]



[계단 측면 단부]



[바닥 개구부]

사고 사례

- 사례 1 자재 인양을 위해 단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다가 떨어짐
- 사례 2 이동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떨어짐
- 사례 3 커튼월 유리 설치 준비 중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단부·개구부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개구부 위치 확인
- 예방 2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고정
- 예방 3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떨어짐 **비계·작업발판** 작업 시 안전수칙

▶ 비계·작업발판이란?

- 높은 건축물의 외벽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로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등이 있으며, 통상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함께 설치합니다.



[시스템 비계]



[강관 비계]



[작업발판]

사고 사례

- 사례 1 비계 위에서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어져서 **떨어짐**
- 사례 2 비계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 중 발을 헛디더 **떨어짐**
- 사례 3 건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가 **무너짐**

핵심 안전수칙

▶ 비계·작업발판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작업발판(폭40cm ↑)은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 예방 2 안전난간(상부·중간) 설치 후 임의 해체 금지
- 예방 3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떨어짐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 사다리란?

- 사다리란 높은 곳을 오르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승·하강용 통로로 접이식 사다리, 일자형 사다리, 고정식 수직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접이식(A형) 사다리]



[수직(일자형)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

사고 사례

- ▶ 사례 1 A형 사다리 위에서 설비 용접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 ▶ 사례 2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떨어짐**
- ▶ 사례 3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사다리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
→ 별도의 작업대 설치
(사다리는 작업대가 아님)



사다리 승하강 중 넘어짐
→ 아웃트리거 설치



- ▶ 예방 1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 사용
- ▶ 예방 2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 ▶ 예방 3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떨어짐 **철골공사** 작업 시 안전수칙

▶ 철골공사란?

- H빔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철골조, 흙막이 가시설 등 건축물의 뼈대(구조체)를 세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철골 기둥 및 보]



[데크플레이트(바닥)]



[흙막이 가시설(버팀보)]

사고 사례

- ▶ 사례 1 안전대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 ▶ 사례 2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 ▶ 사례 3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중**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철골공사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착용
- ▶ 예방 2 철골 인양 시 2줄 길이 체결, 인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 ▶ 예방 3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떨어짐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부재 반입 및 인양	1. 이동식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3. 부재 인양 및 하역 시에는 벨트·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후 2줄 걸이로 체결하며,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4. 부재 인양 하부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 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구조 안전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안전 시설	8. 가설통로 및 연결작업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10.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 이내의 담단(踏段:닫는 계단)을 설치한다.			
작업 안전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체결 및 용접 등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12. 용접을 할 때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13.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체결합니다.
- 철골을 인양할 때는 2줄 걸이 방식으로 인양합니다.
- 조립 또는 인양 중인 철골 부재 하부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떨어짐 이동식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 이동식비계란?

- 강관으로 틀을 만들고 바퀴와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작은 비계로 주로 천장 또는 벽체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동식 비계]



[최상단 난간]



[아웃트리거]

사고 사례

- ▶ 사례 1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 사례 2 아웃트리거가 없는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 ▶ 사례 3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이동식비계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 ▶ 예방 2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 ▶ 예방 3 작업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동 금지



떨어짐·무너짐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안전수칙

▶ 거푸집·동바리란?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때까지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하는 틀을, 동바리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를 말합니다.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 동바리]



[거푸집(유로폼)]

사고사례

- ▶ 사례 1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무너짐**
- ▶ 사례 2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립 중 **떨어짐**
- ▶ 사례 3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거푸집·동바리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 ▶ 예방 2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예방 3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떨어짐·무너짐

거푸집·동바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 콘크리트 타설 계획 등시공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2. 높이가 4.2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여부와 변형, 부식,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검토를 거쳐 조립도를 작성한다.			
구조 안전	5. 시방서를 준수하여 조립도(시공상세도)에 따라 조립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의해 터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 버팀대 및 브라켓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한다.			
	6-1. 동바리는 받침목·깔판 사용, 말뚝박기 등의 방법으로 침하를 방지하고, 동바리의 상하를 고정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6-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등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한다.			
	6-3. (파이프서포트) 이어서 사용하지 말고(최대 2본), 높이 3.5m 초과 시 2m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작업 안전	6-4.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단단히 고정한다.			
	6-5. (데크플레이트)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데크플레이트 밑에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한다.			
	7. 동바리 조립, 해체를 위한 고소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해체하거나 그 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한다(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9.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하며,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미리 해체하지 않는다.			
작업 안전	10.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변위, 침하 여부를 감시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11. (갱폼) 설치·인상·해체를 위해 타워크레인 등에 매달기 전에 상·하부 전단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거푸집 동바리는 구조검토 후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합니다.
-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해체할 때에는 추락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변위가 확인되면 즉시 대피합니다.

떨어짐·끼임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수칙

▶ 고소작업대란?

-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이며, 장비의 형태의 따라 차량탑재형(스카이) 또는 시저형(렌탈)으로 분류됩니다.



[차량탑재형(스카이)]



[차량탑재형(바가지차)]



[시저형(렌탈)]

사고 사례

- 사례 1 경사면에서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 중 넘어짐(공동)
- 사례 2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차량탑재형)
- 사례 3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시저형)

핵심 안전수칙

▶ 고소작업대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이크 설치
- 예방 2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예방 3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떨어짐·끼임

고소작업대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준비	1.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대 안전난간 등의 파손 및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5. (차량탑재형) 조종사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기증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			
	6. (차량탑재형)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7.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및 작동을 확인한다.			
작업 중 조치	8. 고소작업대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을 할 때는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브레이크(공통)를 체결한다.			
	9. 작업대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는다.			
	10. 작업대 탑승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다.			
	11.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12. 작업구간에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13.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작업대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대에서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 과상승방지용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 또는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부딪힘 **트럭 작업 시 안전수칙**

▶ 트럭이란?

•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덤프트럭, 트레일러트럭,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덤프트럭]



[트레일러트럭]



[화물자동차]

사고 사례

- ▶ 사례 1 경사면에 주차한 **덤프트럭이 갑자기 밀리며**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 ▶ 사례 2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이 **보행하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
- ▶ 사례 3 적재함 실린더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적재함에 끼임**

핵심 안전수칙

▶ 트럭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및 시동키 분리
- ▶ 예방 2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유도자 배치
- ▶ 예방 3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의 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부딪힘 트럭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작업 전 조치	1. 운전자가 적절한 면허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덤프트럭 : 1종 대형 화물자동차 : (12톤 이상) 1종 대형, (12톤 미만) 1종 보통			
	2.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3. 상하차 작업장소, 이동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제동장치 · 조종장치, 하역장치 · 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 중 조치	5.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6. 화물 적재 시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거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과적하지 않는다.			
	7. 화물 적재 시 적재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로프,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8.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 탑승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탑승한 경우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9.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않도록 한다.			
	10.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11.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운전자 이탈 시	12.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기를 분리하며,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3. 적재함을 정비하는 경우,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적재함 하강을 방지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트럭과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동통로로 통행하지 않으며, 유도자의 신호에 따릅니다.
- 불가피하게 적재함에 올라갈 때는 안전대 체결 등 추락에 유의합니다.

맞음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 이동식크레인이란?

- 주행이 가능한 차량 등 설비 위에 탑재된 크레인(양중기)으로, 형태에 따라 기중기 또는 차량탑재형으로 구분됩니다.



[크롤러 크레인(기중기)]



[하이드로 크레인(기중기)]



[차량탑재형 크레인]

사고 사례

- ▶ 사례 1 인양로프가 **혹에서 이탈하여 낙하한 중량물**(H빔, 거푸집 등)에 **맞음**
- ▶ 사례 2 이동식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에 거푸집 설치 작업자가 **맞음**
- ▶ 사례 3 **지반이 침하**하여 이동식크레인이 **넘어짐**

핵심 안전수칙

▶ 이동식크레인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혹**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 ▶ 예방 2 중량물 인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예방 3 아웃트리거 설치 전 지반침하 여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맞음 이동식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작업 전 조치	1. 운전원의 적절한 면허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종기), 기종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카고크레인)			
	2.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형식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기종기, ** 차량탑재형 크레인			
	3.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교육한다.			
	4. 과부하장치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5. 이동식크레인 특성을 반영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6. 설치 장소 지반의 침하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7.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작업 중 조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9. 혹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2줄 걸이를 통해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인양작업 하부구역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1.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예외적) 고소 작업	12.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중량물을 높은 곳에서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13.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종기*에 안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사용 불가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 부속서(C.1~C.4)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 줄걸이 로프는 마모되거나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지반 침하 위험장소 : 단단하지 못한 토사 지반, 보도블럭, 빗물받이 등
- ✔ 인양 중인 화물 아래에는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무너짐·맞음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 타워크레인이란?

- 주로 고층 건축물 건립 공사장에서 건축 자재를 고층으로 올리는 데 사용하는 고정식 크레인을 말하며 형태에 따라 T형·L형으로 구분됩니다.



[T형 타워크레인]



[L형(러핑)형 타워크레인]



[지브(붐대)]

사고 사례

- 사례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무너짐**
- 사례 2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 작업자가 **맞음**
- 사례 3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던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타워크레인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1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예방 2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마모·변형 로프 금지
- 예방 3 지브 등 상부에 올라가는 경우 안전대 체결



무너짐·맞음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작업 전 조치	1.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타워크레인 정기검사(완성검사)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2. 작업 구간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3.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작업 중 조치	4.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5.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관련 교육 이수자			
	6.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조립·해체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한다.			
	7.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운전자 이탈 시	8.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을 준수한다.			
	9.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10.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11. 작업 전 과부하장치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12.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13.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이탈 시	14. 2줄 걸이, 마모·손상 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사용 등으로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15. 중량물 인양구간 하부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방법,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자재를 인양할 때는 2줄 걸이,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합니다.
- 인양 중인 화물 아래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무너짐 **항타·항발기 작업 시 안전수칙**

▶ 항타·항발기란?

-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말뚝 또는 흙막이용 파일을 땅에 삽입(항타)하거나 뽑을 때(항발) 사용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항타기]



[리더]



[해머]

사고 사례

- ▶ 사례 1 와이어로프의 사클이 풀리면서 **분리·낙하한 해머에 맞음**
- ▶ 사례 2 항타기 해체작업 중, **분리되어 떨어진 리더에 맞음**
- ▶ 사례 3 **이동 중인 항타기**가 **무너짐**(주변 차량 6대 및 건축물 파손, 일대 정전)

핵심 안전수칙

▶ 항타·항발기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 ▶ 예방 2 설치·해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를 준수
- ▶ 예방 3 지반상태 사전 확인 및 깔판·받침목 등 전도방지조치



떨어짐·무너짐 **건설용리프트 작업 시 안전수칙**

▶ 건설용리프트란?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주로 고층건물 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리프트 본체]



[운반구]



[가이드레일]

사고 사례

- ▶ 사례 1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 가이드레일이 무너짐
- ▶ 사례 2 개방된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으로 떨어짐
- ▶ 사례 3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며 운반구와 함께 떨어짐

핵심 안전수칙

▶ 건설용리프트 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반구 출입문으로 추락
→ 운행 중 출입문
개방금지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고
해체 중 무너짐
→ 작업순서 및 방법 준수

- ▶ 예방 1 설치·인상·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 예방 2 사용 중 출입문 임의 개방 금지
- ▶ 예방 3 안전검사 기한 준수(최초 설치 날부터 6개월 마다)



화재 용접장치 작업 시 안전수칙

▶ 용접장치란?

- 가스나 전기로 금속체에 고도의 열을 가하여 서로 붙이거나 절단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아크용접기, 전기용접기, 가스용접기 등이 있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



[가스 용접기]



[용접 불티]

사고사례

- ▶ 사례 1 용접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인화성물질)에 튀어 화재
- ▶ 사례 2 가스 용단작업 중 불꽃이 역화되면서 LPG통 폭발·화재
- ▶ 사례 3 천장설비 용접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비산하여 화재

핵심 안전수칙

▶ 용접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예방 1 용접·용단 작업구역 인근 가연물 제거
- ▶ 예방 2 산소, LPG 통 등 역화방지장치 설치
- ▶ 예방 3 용접장소 주변 불티비산방지덮개 설치 및 소화기 비치



화재 용접장치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가연물 관리 등	1.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한다.			
	2. 도료(페인트),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			
	3.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4.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작업자에게 알리며,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한다.			
	5. 화재위험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6. 가연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가스 용기 관리	7. 산소, LPG 등 가스용기는 전도 위험이 없는 곳에 비치한다.			
	8. 가스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9. 사용 전, 밸브 등 주요 부위에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10.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제거*한 후, 환기가 잘되는 지상에 보관한다. * 호스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스를 가스용기에 감아둔다.			
용접 용단 작업	11. 작업 전 가스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12.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할 수 없는 고정된 가연물에는 용접방화포를 덮는다. * 15m 높이에서 용접 시, 불티는 최대 11m까지 날아갈 수 있음에 유의 ** 기름, 도료(페인트), 내장재(스티로폼·우레탄폼), 전선, 나무, 폐기물 등			
	13.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불티가 멀리 가지 않도록, 불티비산방지덮개와 불꽃받이를 적정 위치에 비치한다.			
	14. 용접·용단 작업자의 적정 자격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모·앞치마·내열장갑·용접보호안경 착용을 확인한다. *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등			
	15. 용접·용단 장소 인근에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용접작업 전 주변에 있는 가연물과 소화기를 확인합니다.
- 가스용기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접을 할 때는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고 작업합니다.

본 도서의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업무상 이의 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본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관하여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696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발 행 2026년 2월 발행

기 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 작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이사장 김 현 중

과 장 황 효 정

서기관 유 종 호

주무관 이 재 은

실 장 장 경 부

부 장 채 희 윤

과 장 이 민 우

안전  동행 청렴  세상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